

임신·출산·양육 관련 제도안내

kt·kt노동조합



“올해 출산 예정인 직원입니다. 회사에 임신·출산·양육 관련 다양한 제도가 있는데, 한번에 안내해줄 수 있나요?”

✓ KT는 임직원의 임신·출산·육아를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다양한 복무·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→ 임신·출산·양육 관련 제도안내



복무

- **임신기단축근무**: 임신 12주 이내 혹은 36주 이후인 경우 사용 가능 (일 3시간 단축근무)
※ A-type(8시 ~ 14시) / B-type(9시 ~ 15시) / C-type(10시 ~ 16시) / D-type(11시 ~ 17시) 중 선택 사용
- **태아검진휴가**: 월 1일(유급) 사용 가능
- **난임치료휴가**: 연 3일(최초 1회 유급 / 2일 무급)까지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 목적으로 사용 가능
- **무급난임휴직**: 자녀 출산을 위해 병원급 진단서(시험관 출산)를 제출하고 1년간 휴직 가능(수술일정 명시 必)
※ 임신기 직원(ERP 임신정보 등록 必)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 및 휴일야간근로 불가



복무

- **출산전후휴가**
- 1명 출산 시 90일 (70일 유급, 20일 무급 / 산후 연속 45일 이상 사용 必)
- 다태아출산 시 120일 (90일 유급, 30일 무급 / 산후 연속 60일 이상 사용 必)
※ **배우자출산휴가**
- 배우자 출산 시 10일 부여 (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 必 / 1회 분할사용 가능 / Working day 기준 / 유급)

복지

- **경조금(출산축하금)**
- 첫째·둘째 200만원, 셋째이상 300만원 지급
- **출산선물**
- 10만원 상당의 물품 지급 (쌍둥이의 경우 20만원 / 본부내 인사담당자가 신청)
- **단체보험**
- 입원의료비로 회사 실손보험 가입 시 입원비 청구 가능 (여직원 / 여자 배우자 限)



복무

- **육아휴직**
-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 사유로 자녀당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
※ 자동육아휴직제도 시행으로 출산전후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 통합 신청 가능(휴가 종료 후 휴직 전환)
- **육아기 근로시간 단축**
- 일 1~5시간(주 5~25시간) 단축 근무
※ 1년 이내 + 육아휴직 미사용 잔여기간(최대 1년), 3개월 이상의 단위로 분할 사용 가능
- **가족돌봄휴가**
- 자녀 양육 사유로 연간 최대 10일의 돌봄휴가 사용 가능(일단위 신청 가능 / 무급)

복지

- **자녀교육보조비**
- 만 5~15세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해 자녀 1인당 연 60만원 지급
- **의료비지원**
- 사내 의료비 제도를 통한 입·통원 의료비 지원 및 연1회 12월 경 실손보험(본인부담) 가입 가능
- **보육시설**
- 전국 8개 보육시설 운영 중